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 부서장

제 목 영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고시 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69호 (2016. 5. 11.)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70호 (2016. 5. 11.)

다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71호 (2016. 5. 11.)

2. 위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66호, 2016.4.29.) 고시,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56호, 2016. 4. 19.) 고시 및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9호, 2016. 2. 23.)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·발령하였기에 안내합니다.

가. 주요 개정사항

-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급여기준
- 인공중이이식 급여기준
- 색전성 약물방출미세구의 급여기준 및 관련 청구 방법 등

붙임 : 고시 제2016-69호, 고시 제2016-70호 및 고시 제2016-71호 고시 개정문 각 1부

※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대리 이다미 팀장 정운학 국장 류향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231 (2016.05.12)

우편번호 0416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59 (대표FAX : 02-705-9209) E-mail : ldm@kha.or.kr